



# 건설관련 법률상담

곽동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하도급대금 2회분 불지급과 직불요청

**Q** **〈사례〉** A사는 B사에게 공장건축을 도급 주었고, B사는 C사에게 그중 설비공사를 하도급주었다. B사는 C사에게 매달 한 번씩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년 2, 3, 4월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사는 C사에게 남은 공사대금에 대해 A사가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해주고는, 5월 20일에 C사의 2, 3월의 기성금은 5월에, 4월의 기성금은 6월에 C사에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청서를 A사에게 보냈고, A사는 이에 응하여 각 직불을 하였다. 그 후로도 B사가 C사의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사는 5월의 기성금을 직불해 달라고 7월 2일에 A사에게 요청서를 보냈고, 또한 6월의 기성금을 직불해 달라고 8월 14일에 요청서를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B사의 다른 채권자가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결정문이 8월 2일에 A사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다른 하수급인도 하도급대금을 직불해

달라는 요청서를 8월 10일에 A에게 팩스로 보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본 사례는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런 직불요청과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또는 직불요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사유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 중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14조 1항 2호)’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14조 1항 3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본 사례에서는 수급인 B가 하수급인 C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주었고, 발주자 A에게 하수급인 C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2, 3, 4월분 기성금을 직불해 달라고 요청하고, 직불되기도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 3자 간에 5, 6월의 기성금에 대하여도 직불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자 간의 직불합의는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직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본 사례에서는 5월 20일에 B가 C에게 잔금에 대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A에게는 2, 3, 4월의 기성금에 대해서만 C를 대신하여 직불요

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본 사례는 위 3호의 사유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다. 애초에 B사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에서 B사가 향후의 하도급대금을 직불해 달라는 요청서를 C에게 작성해 주고, 이어서 A사에게 C사의 2, 3월의 기성금은 5월에, 4월의 기성금은 6월에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는 원래 하수급인인 C사가 보내야 하겠지만 본 사례에서는 B사가 C사를 대리하여 직불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보면 본 사례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직불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사가 2, 3, 4월분의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였는데, 그 이후의 5, 6월분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미 B사가 2, 3, 4월분의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C사가 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고, 5, 6월분의 하도급대금도 이미 기성분이 완성되었으나 B사가 지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C사가 직불요청을 할 요건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에서 C사는 B사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의 미지급을 이유로 5, 6월분 기성금에 대하여 A사에게 직불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C사가 사유를 오인하여 3자간의 직불합의에 기하여 위와 같이 직불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A사에게 써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여 C사의 직불요청이 부당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불지급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이유로 직불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6월분 기성금에 대한 직불요청은 8월 14일에 보냈는데, 그 이전에 이미 B사의 다른 채권자가 B사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였고, 다른 하수급인도 직불요청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C사의 이 8월 14일자 직불요청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하수급인의 직불요청에는 효력면에서 뒤지게 된다. 먼저 가압류가 되거나 먼저 다른 하수급인이 적법하게 직불요청을 하면 그 부분 채권에 대하여는 그 후에 C사가 직불요청을 하여도 순서에 뒤져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직불요청이 없는 범위에서만 C사의 직불요청이 효력이 있게 된다 (대법원 2010다24176 참고).

참고로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우편 같이 확정일자가 찍혀지는 문서로써 통지해야 하지만, 하수급인의 직불요청서는 굳이 그런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지 않아도 직불요청을 하였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팩스문서로써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하수급인의 직불요청은 그에 선행하는 가압류보다 효력이 뒤질 뿐 아니라, 다른 하수급인이 먼저 직불요청을 한 경우에도 뒤지게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사유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직불요청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